

# 1.일 반 사 항

## 가. 적 용

- 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등보안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초치를 취한다.
- 3)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 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 4)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설계도서시방서 및 내역서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원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누락등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본 공사장내에 감독원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 7)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 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8)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 9)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11)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없도록 지정된 공기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 나. 비 상 전 원

비상전원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한다.
-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수 있도록할 것.
- 3)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른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실내에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 2. 전선관 공사

### 가. 공통사항

- 1) 전선관 시공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가)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 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 나) 매입 배관 공사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 다)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 될 경우에는 전선관의 직경이 스투브 두께의 1/3 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투브 중심에 전선관이 배관되도록 작업시 유의하여야 한다.
  - 라)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 하여야한다.
  - 마) 옥상층의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 할 경우에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 한다.
- 3) 관의 굴곡
  - 가)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고 28C 미만의 전선관은 관내 경의 6 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밴딩 하여야 한다.
  - 나) 박스 상호간 1관로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가 3회 이상 일때 또는 1 관로의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폴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 4) 관의 청소
  - 가)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직후 관내부 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나)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목대, 형겁 및 캡 등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또는 Air Blowing등의 법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 5) 박스류 설치공사
  - 가)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 나)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 다) 노출 박스 설치는 스투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점은 4개소로한다.
  - 라)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때 관련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 나. 금속관 공사

- 1)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 2) 노출 배관
  - 가)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나)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2 m 이하로 한다.
- 3) 관 고정 및 관단에서의 전선 보호
  - 가)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나) 관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리밍 처리하고 반드시 붓싱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다. 합성 수지관공사

- 1)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가) 관 상호 접속은 합성수지 카플링을 사용하며 카플링의 중심 부분에서 관 상호가 닿도록 하며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한다.
  - 나) 관과 박스류 접속은 카플링 및 콘넥타를 써서 접속하여야 한다.
  - 다) 합성 수지관의 밴딩시 화염에 의한 과열로 합성수지 전선관 표면이 손상되지않도록 주의한다.

## 라. 가요관 공사

- 1)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가) 가요관과 금속관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박스류와 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 한다.
  - 나) 가요관의 지지 간격은 1미터 이하로 한다

### 3. 배 선 공 사

#### 가. 전선 입선

- 1) 전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 하여야 한다.
- 2) 전선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할 경우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 3) 강전 전선과 약전 전선은 분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 4) 소화전 및 수신반내 전선처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 보수가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소화전 및 단자함, 수신반내 전선 처리는 회로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회로명을 표시하여 야 한다.
- 6) 감지기 배선은 개로식의 배선으로 하고 도통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

- 1)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 저항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인장강도를 20% 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 2) 합성수지관 (HI PVC전선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덕트 내부에서는 전선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 3)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4)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 5)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압착단자, 나사형 전선콘넥타, 슬리브 등을 사용하며 절연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 가) 압착 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압착 공구에 의하여 단단히 압착한다.
  - 나) 나사형 전선 콘넥타에 의한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나사형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 다) 슬리브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적합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 라) 비닐 전선의 접속 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테이프폭 2분의1 이상을 겹쳐 감던가 절연 부분 이상의 효력을 갖는 절연물을 감아 씌우는등의 방법으로 절연한다.
- 6) 소화전내 수동발신기함의 전선처리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선 및 단자대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배선은 미려하게 정돈 하여야 한다.

## 4.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추가)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 이하로 한다.
- 4) 계단 ( 직통 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미터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는 제외 한다.)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의 수평거리가 50미터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6)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감지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있는 것으로 할것.
- 3) 수신기는 감지기, 종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4)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종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추가)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6)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삭제
- 2) 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 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 부터 1.5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4)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장소에 설치할 것.
- 4)의 2.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위 : 제곱미터 )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스포츠형		보상식스포츠형		정온식스포츠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미터 미만	주유구조구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미터이상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8미터미만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7)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 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 (3종에 있어서는 20미터)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 (3종에 있어서는 10미터) 마다 1 개 이상으로 할 것.
  - ②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③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지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 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를 작

동할 수 있도록 할 것.

5)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장치는 복도,통로,청각장애자용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는 위치(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에 설치한다.

####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발신기의 위치표시는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부착면과 15도 이상의 각도로 10미터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여야한다.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치(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 사.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 KS C 3328 )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 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다만,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준기술에 관한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로 할 것.
-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 $\Omega$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5. 유도등 설비공사

### 가. 피난구 유도등

-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 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나. 통로 유도등

- 1) 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 ② 의 2.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통로의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 ③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할 것.
  -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⑥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제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 조명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0.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수평으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 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이어야 한다.
- 3) 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한 백색바탕의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유도등의 전원

-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11층 이상에 층은 60분이상 작동시킬수 있어야 한다)
- 3)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라.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벽에 설치 할 것.
-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4) 유도표지는 부착판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것.
- 5)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아니할 수 있다.
- 6)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②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③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 ④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한 1제곱미터당 3밀리 칸델라 이상으로 할 것.